

「시설 사용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13. 11. 25. 개정 판 (시행 2013. 11. 1.) → 2006. 2. 28. 제정 판 (시행 2006. 3. 1.)

바뀜 5 · 신설 0 · 삭제 1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55/compare?from=382&to=381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9:45:11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 ① 시설 — 대강당(선교70주년기념관), 보건복지교육관(선교90주년기념관), 제2과학관 세미나실, 요한관 강당, 대학교회, 야외행사(호수), 침례탕/분수대, 손님방(1박), 세미나실(장근철홀, 신학관, 체육문화센터, 백주년기념관 3층 대회의실, 음악관 합창합주실), 일반강의실, 유비쿼터스실(에스라관, 바울관), 인성교육수련원(안면도 체육관 및 숙소), 체육문화센터(주경기장), 운동장(인조잔디구장), 테니스장 ② 차량 — 버스	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각종 시설물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. ① 시설 : 선교 70주년 기념관(대강당), 선교90주년 기념관(다목적관), 대학교회, 운동장, 테니스장, 야외, 침례탕/분수대, 손님방, 세미나실(바울관, 신학관, 제2과학관, 체육관), 체육관(주경기장) ② 차량 : 버스,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
제3조(사용자) ① 시설 및 장소: 사용자는 학교의 허락을 득한 자에 한 한다. ② 차량: 사용자는 교수·직원·학생에 한 한다.	제3조(사용자) ① 시설 : 사용자는 재단 내 기관 및 교역자에 한 한다. ② 차량 : 사용자는 교수 · 직원 · 학생에 한 한다.
제5조(사용료) 사용료는 시설 및 장소사용료와 차량사용료로 분류한다. ① 시설 및 장소사용료 1. 학교에서 실시하는 행사(공식적인 행사)를 제외한 모든 행사는 사용료를 납부 한다. 2. 각 학회 행사는 본 대학 행사로 보지 않는다. 3. 교직원외 외부행사(학회 및 대회) 유치 시에도 사용료를 납부한다. 4. 정규수업 외의 시설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. 5. 모든 행사는 2시간을 기본으로 한다. 6. 금요일에 행하는 모든 행사는 15:00 이전에 종료함을 원칙으로 한다. 7. 동아리 활동으로 인한 장소사용(운동장/테니스장)은 주간에 실시하며, 야간 활동 시 라이트 사용은 불허한다. 8. 모든 시설의 사용료는 사용하기 전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사용할 수 있다. (단위: 원)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(시간당초과) 냉/난방 (일과후/공휴일) 비고 1박 주말(2시간)	제5조(사용료) 사용료는 차량 사용료와 시설사용료, 장소사용료로 분류한다. 구분 사용거리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버스 100km이내 1회사용 200,000 4시간이내, 추가 1시간당 10,000 101km-300km 1회사용 250,000 6시간이내,추가1시간당 10,000 301km-500km 1회사용 300,000 8시간이내,추가1시간당10,000 501km이상 1회사용 400,000 8시간이내,추가1시간당10,000 도로비,주차비,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승용차

현행	개정안
평일(2시간) 대강당 (선교70주년기념관) 800,000 600,000 200,000 냉방 200,000 스크린(중앙,좌,우) - 300,000 리허설 1회 당일포함) 난방 250,000 보건복지교육관 (선교90주년기념관) 350석 450,000 250,000 100,000 냉방 100,000 리허설 1회 - 100,000 난방 150,000 제2과학관(세) 150석 150,000 50,000 냉방 100,000 난방 150,000 요한관 강당 450석 550,000 350,000 100,000 냉방 150,000 난방 200,000 야외행사 100,000 야외예배(안) 무료 침례탕/분수대	1일사용 80,000 연료비 200/km 별로 납부 승합차 1일사용 80,000 연료비 100/km 별로 납부 화물차 1일사용 80,000 연료비 100/km 별로 납부 -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야기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금전적 부담원칙 -접촉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. 1. 차량사용료(휴일, 방학중만 가능) 1. 차량사용료(휴일, 방학중만 가능) 구분 시설명 사용료 추가사용료 (초과시간당) 냉/난방 비고 기존 선교70주년기념관 (대강당) 600,000 (2시간) 200,000 220,000 MultiCube-(기본2시간) 600,000 (초과1시간) 150,000 리허설 1회 - 200,000 (다목적관) 250,000 (2시간) 140,000 리허설 1회 - 100,000 대학교회 400,000 폐백실 사용- 100,000 (교직원 및 대학교회 교직원 직계50%) 리허설 1회-200,000 운동장 200,000 방송시설(앰프) 사용시 - 100,000추가

현행	개정안
80,000	사용 후 주변 정리 조건
용할 경우 - 40,000	테니스장
손님방	100,000
50,000	1코트 사용 시,
(\$ 50)	오전/오후- 50,000
2인 1실 사용시	야간-1코트(1시간)당10,000
- 70,000(\$ 70)	야외행사
인성	100,000
교육관	야외예배(안)
침실	무료
30,000	단: 쓰레기 수거비
총 17실	50명 미만 30,000원
강의실(1일)	50명 이상 50,000원
50,000	100명 이상 100,000원
신학관, 체육관, 백주년기념관3층 대회의실,	침례탕/분수대
장근청홀,	80,000
음악관 합창합주실	본 교회 침례식후 사용할 경우-40,000
150,000	손님방
50,000	(1박, 조식)
냉방	일반인
100,000	20,000(\$20)
2010 행정협의회 회의록(10-22)시설 및 장소 사용료 규정	2인1실 사용 시 30,000(\$30)
개정 내용 결의	신규
난방	세미나실
150,000	150,000
일반 강의실(1일)	기본 냉/난방 시간 외
50,000	별도 냉/난방 없음
유비쿼터스실	체육관(주경기장)
(에스라관, 바울관)	200,000
100,000	(2시간)
50,000	1일-500,000 오전/오후-300,000
1일 - 200,000	2. 시설 및 장소 사용료
인성교육수련원	2. 시설 및 장소 사용료
(안면도 체육관)	
구분	
1시간	
3시간	
종일	
냉·난방비 및 전기,상수도비 포함	
50% 할인	
동절기	
80,000	
150,000	
250,000	
하절기	
90,000	
170,000	
280,000	

현행	개정안
인성교육수련원 (체육관2층 숙소) 주말-50,000 평일-30,000 교직원사용료 무료 체육관(주경기장) 체육시설 대관 기준표에 의한다. 운동장(인조잔디구장) 테니스장 * 기타 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행정협의회 및 해당 회의의 결의에 따른다. ② 차량사용료 구분 사용거리 기준 사용료 버스 100Km 이내 1회 사용 300,000원 101Km~300Km 1회 사용 350,000원 301Km~500Km 1일 사용 400,000원 501Km 이상 1일 사용 500,000원 도로비, 주차비, 기사 수고비는 사용자 부담 - 버스는 휴일, 방학중만 사용이 가능하다. -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차의 차량사용료는 수송팀 내부규정으로 정한다. - 도로교통법규 범칙금 및 사고로 야기되는 차량수리비는 사용자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
제6조(사용절차) ① 모든 시설 사용허가는 4주전까지 사무처 총무과에 신청하여 소행정협의회의 승인을 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② 시설사용 하루 전까지 총무과에 시설사용료를 납부한다. ③ 차량 사용은 1주전까지 수송팀에 신청하여, 사용 전·후 요금을 정산한다.	제6조(사용절차) ① 시설 : 시설 및 장소 사용은 행사 1주전에 총무과에 신청, 승인 후 재무실에 사용료 납부한다.(사용전일까지) ② 차량 : 차량 사용은 1주전 수송계에 신청하고, 사용 직후 요금을 정산한다.
제7조(인건비지출) 주말 등 근무시간 이후에 행하는 행사의 인건비는 투입되는 인원수에 따라 다르며 인건비 지급은 별도로 정한다.	<삭 제>
제8조(기타)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.	제7조(기타) 이외의 기타 사항은 행정협의회에서 정한다.